

## [사회적]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

### 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(조직변경·합병) 법무법인 채용

(사회적)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'(사회적)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 인지 여부'가 충족되어야 합니다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은 조직의 특성 및 협동조합의 존재의 등을 고려하여, (사회적)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#### 1.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주체(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)

##### 협동조합기본법

**제60조의2(법인등의 조직변경) ①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(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)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·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.**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60조의2 제1항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주체로 ① 유한책임회사, ② 주식회사, ③ 유한회사,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

동 규정은 상법상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를 조직변경 주체로 규정하였으므로,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회사, 합자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습니다.

또한, 회사 및 영리법인으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법인격이 없는 기업(합자조합, 익명조합, 동업조합, 개인사업자, 비법인사단, 비영리단체, 법인의 지점)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 재단법인 역시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할 수 없습니다.

#### 2.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주체(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05조의2 제1항)

##### 협동조합기본법

**제105조의2(협동조합,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"조직변경대상법인"이라 한다)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·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.**

##### 1.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

##### 2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

##### 3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「민법」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

##### 4. 법인등

## 2021.8. 월간 안내사항

###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(조직변경및합병)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105의2 제1항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주체로 ①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② 비영리 사단법인,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「민법」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, ④ 유한책임회사, ⑤ 주식회사, ⑥ 유한회사,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일반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, 동 규정은 상법상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를 조직변경 주체로 규정하였으므로,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회사, 합자회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법인격이 없는 합자조합, 익명조합, 동업조합, 개인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.

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비영리 사단법인도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민법상 사단법인과 달리, 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습니다. 재단법인의 경우는 구성원이 아닌 ‘재산’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성질상 의결권한을 가지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#### **(일반)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는 경우**

- ① 상법상 인적회사(합명회사, 합자회사)
- ② 법인격 없는 기업(합자조합, 익명조합, 동업조합, 개인사업자, 비법인사단, 비영리 민간단체, 법인내 사업단, 법인의 지점)
- ③ 사회적협동조합
- ④ 비영리 재단법인
- 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

#### **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는 경우**

- ① 상법상 인적회사(합명회사, 합자회사)
- ② 법인격 없는 기업(합자조합, 익명조합, 동업조합, 개인기업)